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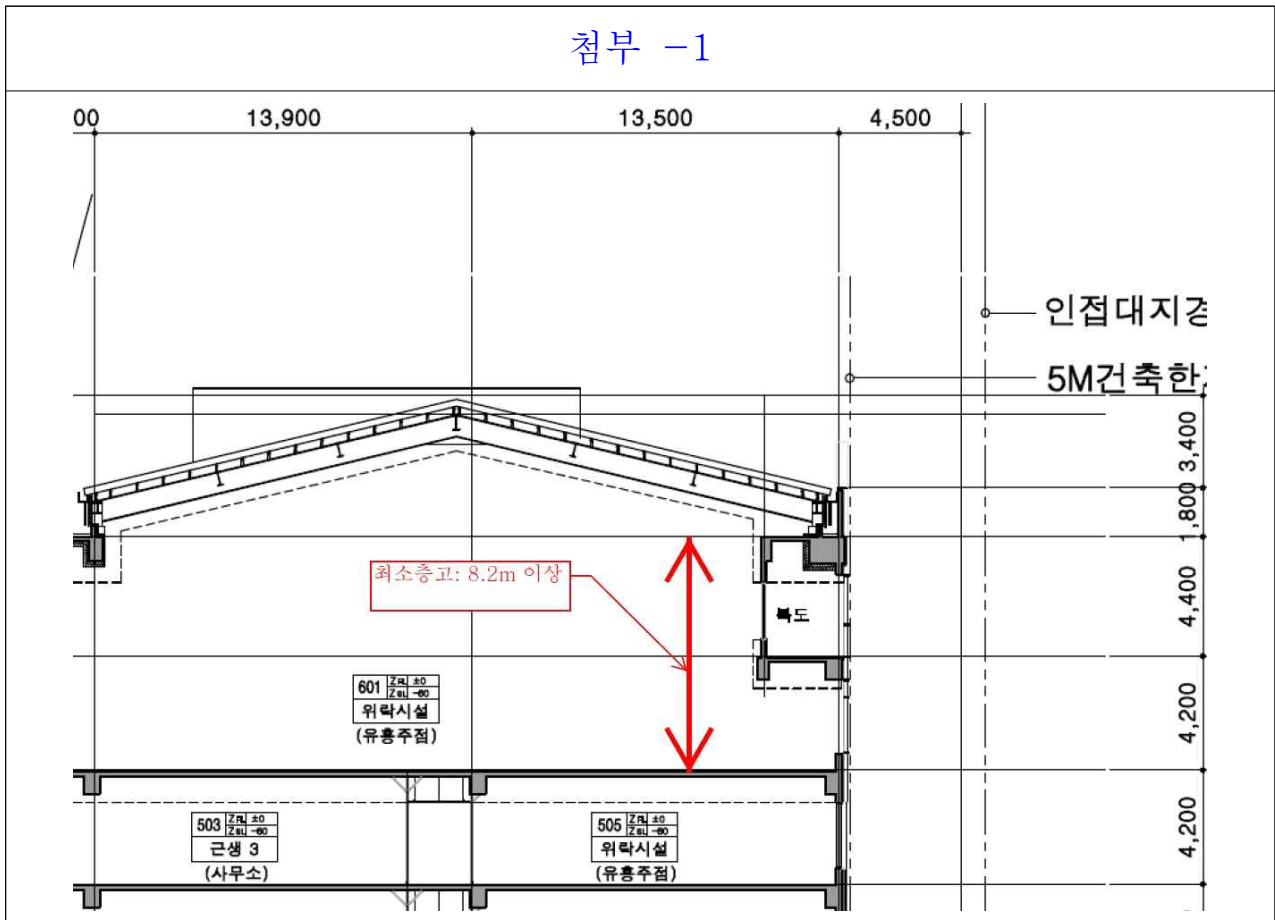
2020년 제9회 건축 소위원회 서면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원창동 488 외 8필지 참고시설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서구청	심의일자	2020. 09. 25.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○○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		
	지 번 488	관련지번 488-1, -3, -4, -5, -6, -7, -8, -9	
	대지면적 24,650.82 m ²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준공업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6,594.06 m ²	건폐율 67.32 %	층수 지하: 1층 / 지상: 9층
	주 용 도 참고시설	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, PC구조, 철골조	건축물 동수 2동
	최고높이 73 m	용적률 125,427.65 %	연면적 합계 299.47 m 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(구 조)분야	○ CFT기둥은 기성품이 아닌 주문제작 방식이므로, 사각Box(4면) Plate 용접부 강도 및 품질확보가 필수임. 따라서 구조설계자가 CFT기둥 제작을 위한 강재의 재질, 2-Seam 또는 4-Seam의 제작 방식 결정과 맞댄용접 상세도(개선형태, 개선치수, 용접살 두께 등)를 제시하고 상세를 추가 반영 필요	
	(공 통)분야	○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건축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, 착공신고 등) 시 반영할 것	
심의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안 의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조건부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

첨부

첨부 -1



첨부 -2

